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0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유상범・박대출・김기현

김정재 · 이양수 · 김석기

박성민 • 서천호 • 최은석

이철규 의원(10인)

제안이유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는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주요내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97條(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 | 第97條(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 |
| 의 意見) ① ~ ③ (생 략) | 의 意見) ① ~ ③ (현행과 같 |
| | 승) |
| ④ 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 | <u><삭 제></u> |
| 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 |
| <u>수 있다.</u> | |